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0. 10. 19.

행정재경위원회

|          |     |
|----------|-----|
| 의안<br>번호 | 315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강남구청장(일자리경제과)
-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출자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창업기업 정책수요 조사 결과,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수요가 높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용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sup>1)</sup>
    - 또한,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3,339개)이 투자 전년대비 4만8천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8만 790명→12만 8,815명)하여 벤처투자금 10억원당 4.2개, 기업당 14.4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sup>2)</sup>를 보이는 등 벤처투자는 효과 빠른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구 소재 벤처기업 수는 ' 20년 8월 기준 2,002개<sup>3)</sup>로 서울시 최다 수준이나 용자 중심의 현재 지원 정책만으로는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장 단계별 전략 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마련 필요

○ 출자개요

- 출자대상 : 강남창업펀드(가칭)
- 출자규모 : 1,000,000천원(총 펀드규모는 민간자금 결성액에 따라 확정)
- 운용기간 : 8년(2021~2028)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 출자조건

▶ 강남이라는 지역명 반드시 포함

▶ 우리구 소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의무투자비율(200%이상) 유지 등

○ 출연내용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 출 연 금 : 18,500천원

다.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기금의 투자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 편성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기업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1)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8.

2)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4.6.

3)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2020.9.2.

를」 제71조4)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 2항5)에 따라 투자계정에서 펀드에 출자하는 것임.

- 용자중심 지원정책에서 투자중심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바 창업 기업 초기단계에서 용자중심의 자금조달방법을 출자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혁신성장 분야 벤처기업들이 출자방식을 선호하고,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춘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 출자규모를 조정하여 벤처기업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펀드의 운용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6)으로 구성된 “출자조합”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약정액 내에서 자금(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을 조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방식임.

○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출자규모는 10억원, 운용기간은 8년,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 출자조건으로 강남이라는 지역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우리구 소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의무투자비율(200%) 유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 펀드 운용사 선정에 각별히

####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유한책임조합원 중 특별조합원은 정부모태펀드 등이며,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필요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음.

유의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315 |
|----------|-----|

제출년월일 : 2020. 10.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일자리정책과

## 1.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창업기업 정책수요 조사 결과,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수요가 높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용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
- 또한,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3,339개)이 투자 전년대비 4만8천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8만 790명⇒12만 8,815명)하여 벤처투자금 10억원당 4.2개, 기업당 14.4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는 등 벤처투자는 효과 빠른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구 소재 벤처기업 수는 '20년 8월 기준 2,002개로 서울시 최다 수준

이나 용자 중심의 현재 지원 정책만으로는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장 단계별 전략 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마련 필요

#### 나. 출자개요

- 출자대상 : 강남창업펀드(가칭)
- 출자규모 : 1,000,000천원(총 펀드규모는 민간자금 결성액에 따라 확정)
- 운용기간 : 8년(2021~2028)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 출자조건
  - 강남이라는 지역명 반드시 포함
  - 우리구 소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의무투자비율(200%이상) 유지 등

### 3. 참고자료

#### 가.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기금의 투자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 편성

# 관 련 법 령

##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협력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